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3
----------	-------

제출년월일 : 2015. 8. 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5.1.1.)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명확한 청소행정의 업무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상세 규정 마련(안 제9조의2~제9조의3)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례 규정 미비로 보관장소 지정, 처리 기준·방법 및 관리·보고 조항을 상세화하여 규정

나. 영업장 배출 연탄재 수수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2호)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무상 수거하되, 영업장 배출 연탄재는 종량제 수수료 부과

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자치구별 감량목표 의무 할당제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시급
- ※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1단계:2015년, 2단계:2017년)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 적극 추진

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 종량제봉투 제작시 위조방지 기술 도입

마. 종량제봉투 공급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3조제2항)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종량제 봉투 공급의 효율적인 방식을 검토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 조항 신설(안 제32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5조, 제34조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구 세입조치

사.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지급기준을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1.1.)에 따라 1인당 60리터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한도를 매월 120리터로 규정

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2011.4.6.)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시행령을 적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동의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7. 9)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이라 함은”을 ““폐기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폐기물”이라 함은”을 ““생활폐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정폐기물”이라 함은”을 ““지정폐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대형폐기물”이라 함은”을 ““대형폐기물”이란”으로, “냉·난방기 등”을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을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집·운반·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11. “재사용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구청장과”를

“지방자치단체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구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보”로, “하며,지체없이 다음”을 “하며, 다음 각 호의”로, “시장”을 “지체 없이 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규칙 제3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로,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으로, “서울특별시시장”을 “시장”으로, “설립·운영 할”을 “설립·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과”를 “협의회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7호(중전의 제6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취소시”를 “취소 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기타 규칙 제17조”를 “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투기 폐기물”을 “무단투기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구역 내”를 “대행구역 내”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준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중전의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로, “기타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중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탄재는 부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배출하되,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별표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유선으로 배출장소와 배출량을 신고하거나,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에게 있다.

6.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1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또는 그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폐기물이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제10조제4항 중 “규정에 의한”을 “조치에 따라”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을 “이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 중 “수집·운반”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여건등”을 “여건 등”으로, “분리 배출할수”를 “분리배출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보 비치”를 “확보·비치”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마포구”를 “구”로 한다.

제14조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연탄재”를 “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규격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

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한다.

제19조제2항 중 “일반규격봉투”를 “일반종량제봉투”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규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일반규격봉투”를 “일반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을 “(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제작)”을 “(종량제봉투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제작·유출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종량제봉투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와 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 4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④ 구청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판매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을 재사용종량제봉투에 인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봉투제작”을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민·형사상”을 “민형사상”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을“(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회수·보관”을 “회수·보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을“(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봉투를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규격봉투를 구입”을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이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봉투판매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격봉투 판매인이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종량제봉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정가격표 부착

제25조제1항제3호 중 “유출봉투”를 “유출 종량제봉투”로, “판매금지”를 “판매 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제25조제1항제5호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제25조제2항 중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를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를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 판매소”를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로, “지체없이 판매소”를 “지체 없이 봉투판매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를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규격봉투 판매소”를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종량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8조 중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을 “봉투판매소에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을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품과 가정용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제10조제2항제4호”로, “배출 신고”를 “배출 신고”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취소(변경)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해당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규격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를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를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로, “구청장이 결정”을 “구청장이 결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을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당해”를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를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 시”로, “규격봉투가격”을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을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규격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을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으로,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날부터15일”을 “날부터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3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로,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3조 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를 “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납부기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 하여”를 “감안하여”로, “기간 중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해당년도”를 “중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 연도”로, “기간 중에는 해당년도”를 “중에는 해당 연도”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3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류폐기물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을“(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단투기에”를 “무단투기행위에”로, “활성화 하기”를 “활성화하기”로,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투기내용등을”을 “투기내용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형 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7호 관련)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1	냉장고	업소용 1000ℓ 이상	25,000	31	비디오	본체	2,000
2		500ℓ 이상	11,000	32	식기건조기		2,000
3		300ℓ 이상	8,000	33	식기세척기		4,000
4		300ℓ 미만	6,000	34	오디오	본체	4,000
5	텔레비전	42인치이상	7,000	35		스피커(1개)	2,000
6		25인치이상	5,000	36	전기밥솥	10인용이상	3,000
7		25인치미만	3,000	37		10인용미만	2,000
8	컴퓨터	본체	3,000	38	전자레인지		2,000
9		모니터(CRT)	3,000	39	가스레인지		3,000
10		모니터(LCD)	2,000	40	전화기		1,000
11		프린터	3,000	41	청소기	업소용	3,000
12		키보드	1,000	42		가정용	2,000
13	에어컨 (실외기포함)	80㎡이상	11,000	43	정수기	20ℓ 이상	5,000
14		66㎡이상	7,000	44		20ℓ 미만	3,000
15		66㎡미만	4,000	45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16	세탁기	10kg이상	6,000	46		소형	6,000
17		10kg미만	5,000	47	장롱(옷장)	가로120cm 이하	18,000
18		6kg미만	4,000	48		가로 90cm 이하	13,000
19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6,000	49		가로 60cm 이하	10,000
20		높이1m미만	3,000	50	1인용(전체)	13,000	
21	탈수기		3,000	51	2인용(전체)	18,000	
22	공기청정기	80㎡이상	4,000	52	침대	1인용메트리스	7,000
23		66㎡이상	3,000	53		2인용메트리스	11,000
24		66㎡미만	2,000	54		1인용침대틀	6,000
25	선풍기	가정용	2,000	55		2인용침대틀	7,000
26		산업용	3,000	56		1인용	26,000
27	가스히터		2,000	57	돌침대	2인용	36,000
28	가습기		2,000	58		3인용	8,000
29	녹즙기		1,000	59		소파	2인용
30	믹서기		1,000	60	1인용		4,000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61	책상	양수	9,000	94	자전거	(2발)	4,000
62		편수	6,000	95		아동용(3발)	3,000
63	컴퓨터책상	너비120cm이상	4,000	96	옷걸이(행거)		2,000
64		너비120cm미만	3,000	97	난로		3,000
65	의자	3인용	7,000	98	가방	여행용(바퀴부착)	3,000
66		2인용	5,000	99		일반용	2,000
67		1인용	3,000	100	다리미		1,000
68	책꽂이	3단이상	3,000	101	다리미판		1,000
69		3단미만	2,000	102	돗자리	1㎡당	1,000
70	서랍장	5단이상	6,000	103	드라이기		1,000
71		4단이하	3,000	104	병풍	2폭당	1,000
72	화장대		4,000	105	보일러		4,000
73	책장	1㎡당	4,000	106	빨래건조대		1,000
74	진열장(진열대)	1㎡당	4,000	107	수족관	영업용 1㎡당	10,000
75	장식장	1㎡당	4,000	108		가정용 1㎡당	4,000
76	문갑	1㎡당	4,000	109	스키		3,000
77	식탁(테이블)	5인용이상	5,000	110	시계	1m이상	3,000
78		4인용이하	3,000	111		1m미만	2,000
79	차탁자(교자상)		2,000	112	싱크대	1쪽당	4,000
80	쌀통	1㎡당	3,000	113	욕조		6,000
81	찬장	1㎡당	4,000	114	유아용	그네	1,000
82	신발장	1㎡당	3,000	115		목마	1,000
83	거울(유리)	1㎡당	2,000	116		자동차	2,000
84	밥상	5인용이상	3,000	117	유모차(보행기)		3,000
85		4인용이하	2,000	118	이불	1채당	2,000
86	비키니옷장		1,000	119	욕매트	2인용	7,000
87	캐비닛		6,000	120		1인용	4,000
88	액자	1㎡ 이상	2,000	121	장판	1㎡ 당	1,000
89		1㎡ 미만	1,500	122	카펫	1㎡당	2,000
90	문짚	1짚당	2,000	123	전기장판	1인용	2,000
91	피아노		30,000	124		2인용	3,000
92	전자피아노(오르간)		6,000	125	재봉틀		3,000
93	화일캐비닛		4,000	126	금고	0.5㎡ 당	10,000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127	타이어	대형(1,100mm이상)	6,000	140	창문	1짝당	2,000
128		중형(600mm이상)	3,000	141	오락기	업소용	9,000
129		소형(600mm미만)	2,000	142		가정용	3,000
130	타자기		2,000	143	파티션	1㎡ 당	3,000
131	탁구대		15,000	144	팩시밀리		3,000
132	화분	50cm이상	1,500	145	복사기	1m이상 (재활용불가시)	9,000
133		50cm미만	1,000	146		1m미만	2,000
134	물탱크	1t용량당	10,000	147	환풍기		2,000
135	서랍(만)	장롱·옷장용	2,000	148	김치독	용기류제외	3,000
136		책상용	1,000	149	블라인드	2㎡당	1,000
137	세단기		5,000	150	런닝머신	(재활용불가시)	10,000
138	세면대		3,000	151	마네킹		3,000
139	수도호스	10m당	1,000	152	화환		3,000

-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제2조제8호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함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p>※ 벽지 제외</p>
2. 비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비닐류(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p>※ 비닐 장판 제외</p>
3.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 - 기타 캔(부탄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 축소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살충제용기)	
4.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거울, 내열식기류, 사기류(화장품용기, 식기, 화분 등), 자동차유리, 강화유리 등은 제외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 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 제품의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대리점 포함)등에게 직접 수거 요청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 건축현장, 집수리 중 발생한 것, 단열재로 사용한 것, 복합재질 등은 제외
6.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7. 폐형광등	- 폐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봉투에 배출)
8. 폐건전지	- 폐건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9.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0. 윤활유	- 윤활유(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1. 의 류	- 헌 옷, 헌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배출 -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이불, 베개, 쿠션, 여행용가방, 헌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제9조의3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2부를 작성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지정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 인계절차 등

가.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한다.
- 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 2) 처리업자는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4.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소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지정된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따른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부터
5ℓ	120	130	-	-
10ℓ	220	250	-	-
20ℓ	440	490	-	-
30ℓ	660	740	1,080	1,2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100ℓ	2,220	2,500	3,600	4,000

(특수규격봉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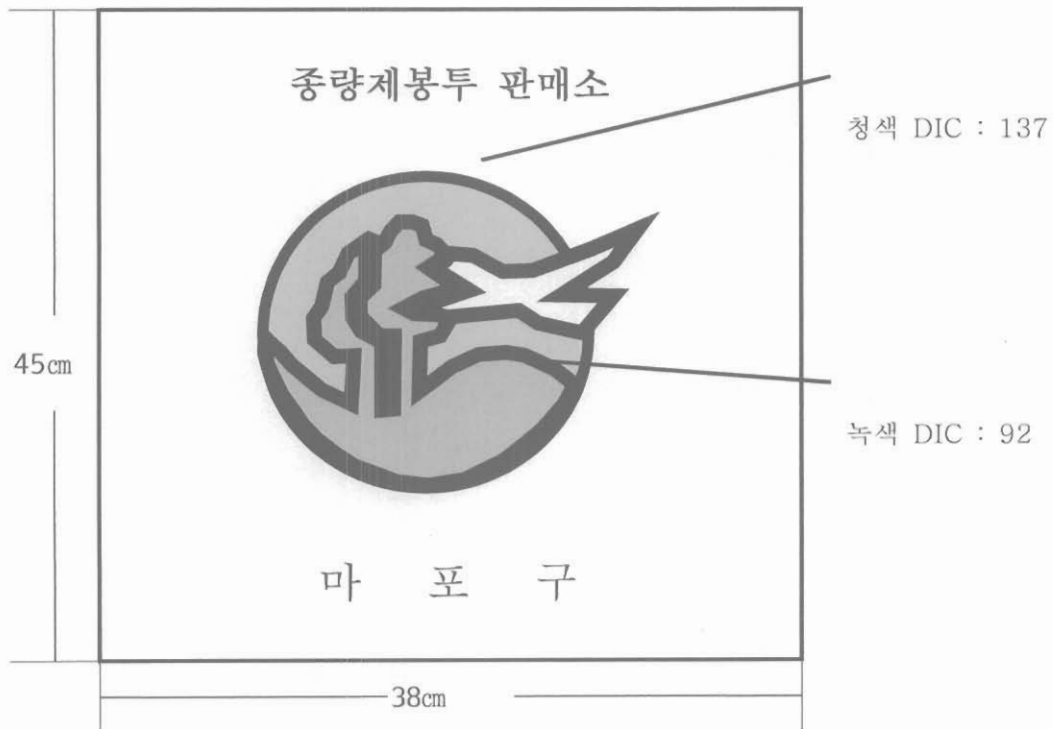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50ℓ	4,600	5,100

※ 음식물류폐기물봉투 가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별표 5]

중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24조제3항 관련)



<비고>

1. 글씨 위치는 표지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지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지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43)·검정색·흰색·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자	⑪ 상 호		⑫ 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⑯ 처리방법		⑰ 반 입 량	kg
⑱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차. ⑭, ⑯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 카. ⑮, ⑰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폐기물명	규격	수량	배출원인	재사용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배출 예정일시			배출장소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마포구청장 귀하</p>					
수입증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업종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마 포 구 청 장</p>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처리 기간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10일 (신고일로부터)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주 소						
취소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납부금액	환불신청액	변경내역
	합 계					
취소(변경)사유						
신고인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left;">마포구청장 귀하</p>						

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이
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
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
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
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
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
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
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
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
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
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이
란 생활폐기물 중 -----

-----.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을 말한다.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자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를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

-----.

7. “대형폐기물”이란-----

-----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
-----.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중량제봉투”란 생활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에 따라 -----

-----.

④ ----- 제3항에 따라-----
----- 서울특별시 마포구보-----
----- 하며, 다-----
음 각 호의 ----- 지체 없이-----
시장-----.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

제5조(구의 책무) ①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② (생략)

③법 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

② -----

----- 시장 -----

제6조(구민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폐기물관리법 시행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규칙」 제5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시장

설립·운영할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와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4.·5. (생략)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규칙 제17조의 허가기준 및 요건 구비 여부

③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 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

자-----

1.·2. (현행과 같음)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법 제27조에 따른 -----
----- 취소시 -----

8.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

③ -----

무단투기폐기물 -----

④ ----- 대행

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 설>

구역 내-----

-----.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준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 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폐기물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당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

----- 해당 -----

-----.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
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
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
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
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
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
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
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
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
다.

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
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
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
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
의 생활폐기물 -----
각 호-----
-----.

1. 제16조에 따른-----

----- 종량제봉투-----

-----.

2. 연탄재는 부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배출하되,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
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
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 별표 2 -----

에 답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 관내 동별 구분없이 동장에게 신고하여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 할 경우 전산망에 신고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인 피피(P·P)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배출장소

다. 폐기물 종류

라. 배출량(포대수)

4.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답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우선으로 배출장소와 배출량을 신고하거나,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에게 있다.

6. 기타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
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
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
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
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
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1개월의 범
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
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
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
하는 행위

3.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
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
각하는 행위 또는 그 연소 잔
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폐

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

기물이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④ -----
조치에 따라 -----
----- 이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방법-----
-----.

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⑥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

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 여건 등-----

----- 분리배출할 수 -----

1. (현행과 같음)

2. -----

확보·비치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

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마포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 제9조제1항에 따른-----

구 -----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제9조 제1항에 따른 -----

독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생략)

②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 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

-----.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 -----
-----.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
-----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 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

----- 종량제봉투-----

----- . -----

-----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

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 봉투” 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③ 특수규격봉투-----

일반종량제봉투-----

-----.

④ (생 략)

제20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양·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

-----.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제작·유출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종량제봉투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와 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 4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신 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판매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을 재사용종량제봉투에 인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 종량제봉투 제작 -----
----- 민형사상 -----

-----.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 종량제봉투 -----

----- 회수·보관하는 -----

-----.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의 관리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 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③ ----- 종량제봉투-----

-----.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봉투를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④ -----
----- 종량제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격봉투 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2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 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규격봉투 판매업자는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 과 같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

구입해서 -----.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

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해당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규격봉투 판매인이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에게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이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봉투판매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종량제봉투-----
각 호-----
-----.

1. 종량제봉투-----

2. 규정가격표 부착
3. ----- 유출 종량제 봉투 -----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격봉투 판매소에서 한다.

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징수) 봉투판매소에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제4항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품과 가정용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활용하여 징수 한다.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규격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 제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
----- 배출 신고-----

-----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취소(변경) 신고-----
----- . 단, 해당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 .

제30조(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 제9조제1항에 따른 -----
----- 종량제 봉투 -----

작비의 부과·징수금액은 실제
작비에 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
조 제1항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
기물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
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
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
호 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
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
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등) ① -----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 해당 -----

② -----
----- 폐기물처리시설 -----

③ ----- 제2항에 따른 반
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 -----
----- 구청
장이 결정하여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생략)

3.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②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

-----.

1. -----

----- 해당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삭제>

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

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유형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의거 안분된 반입처리비용으로 같음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대행지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 감면대상자 배출 폐기물, 공공장소 청소로 배출된 폐기물을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한 경우에 그에 따른 대행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할 반입처리비를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투에는 해당 -----

-----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 시--

- 종량제봉투 가격-----

--.

<삭 제>

<삭 제>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① 규격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규격봉투 판매업주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

<삭 제>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
----- 종량제봉투 -----
----- 날부터 15일 ----- .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삭 제>

③ 제3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

----- 종량제봉투 -----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제1항의 규격봉투 판매대금 납부고지서, 제3항의 규격봉투 제작비 납부고지서, 제4항의 폐기물 처리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체납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 금고로 지정

<삭 제>

<삭 제>

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납부기한 내-----

② -----

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매년 1.1 ~ 매년 6.30) 기간 중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 ~ 매년 12.31) 기간 중에는 해당년도 7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삭 제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

----- 감
안하여 -----
----- 중에는 해당 금융기관
의 해당 연도 -----

----- 중에는 해당
연도 -----
-----.

③ 삭 제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
-----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연4회 지급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 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처

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류폐기물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① 무단투기행위에

----- 활성화하기 -----

-----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투기내용 등을 -----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등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
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
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별표 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일반규격봉투> (단위: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5ℓ	90	-
10ℓ	170	-
20ℓ	350	-
30ℓ	510	-
50ℓ	850	1,020
75ℓ	1,300	1,520
100ℓ	1,750	2,040

<특수규격봉투> (단위:원)

구분	특수규격봉투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겸용)
50ℓ	1,800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
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종량제봉투> (단위: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	
	2016년 까지	2017년 부터	2016년 까지	2017년 부터
5ℓ	120	130	-	-
10ℓ	220	250	-	-
20ℓ	440	490	-	-
30ℓ	660	740	1,080	1,2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100ℓ	2,220	2,500	3,600	4,000

<특수규격봉투> (단위:원)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50ℓ	4,600	5,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세입·세출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청소행정과 이정엽
연 락 처	02-3153-9214